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6-8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택가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,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2조)

나. 구의 책무,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
- 1)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마련
- 2)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실시

다. 재활용품 수집인의 선정 및 임무(안 제5조 및 제6조)

1) 재활용품 수집인의 선정

-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수집인 선정

2) 재활용품 수집인의 임무

-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
-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
-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

라. 비용의 지원

- 1)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- 2)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수집보상금 지원
- 3) 수집인에 대한 지원은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

- 1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**4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 : 2016. 8. 11. ~ 8. 3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평가대상	권고사항	조치사항
제5조 (수집인선정)	수집인 선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, 방법, 제출서류, 신청자의 범위,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권고.	○ 권고의견 반영 - 수집인 선정기준 구체화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 10. 11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
바. 비용추계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활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.
2. “재활용품 수집인”(이하 “수집인”이라 한다)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 등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4조(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)**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집인 선정)**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을 선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1.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
2. 관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대비 필요인원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6조(임무)** 수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
2.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
3.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

**제7조(비용의 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가. 조례 제7조(비용의 지원 등)

-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각종 물품 구매,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 -: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소요 기금 및 내역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재활용품 수집인 수집보상금	85,200	85,200	85,200	85,200	85,200	426,000
	○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물품구매	9,940	9,940	9,940	9,940	9,940	49,700
	소계(b)	95,140	95,140	95,140	95,140	95,140	475,700
□ 총 비용(a-b)		95,140	95,140	95,140	95,140	95,140	475,700

### 4. 재원조달 방안 :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편성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의존 재원	소계						
	시비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계						
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 등						
	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	95,140	95,140	95,140	95,140	95,140	475,700
	지방채						
민간자본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95,140	95,140	95,140	95,140	95,140	475,700

### 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

### 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청소행정과 임종훈
연락처	02-3153-9225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연 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		(2015년)	(2016년)	(2017년)	(2018년)	(2019년)	
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운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	재활용품 수집인 수집보상금	85,200	85,200	85,200	85,200	85,200	426,000
	소 계 (a)	85,200	85,200	85,200	85,200	85,200	<b>426,000</b>
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	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입	9,940	9,940	9,940	9,940	9,940	49,700
	소 계 (b)	9,940	9,940	9,940	9,940	9,940	<b>49,700</b>
□ 총 계(a+b)		<b>95,140</b>	<b>95,140</b>	<b>95,140</b>	<b>95,140</b>	<b>95,140</b>	<b>475,700</b>

### <산출기초> 2017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편성(안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내역	예산과목
합 계	95,140		
수집인 수집보상금	85,200	· 50,000원×12월×142명=85,200	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, 일반보상금, 기타보상금
수집인 안전장비 및 물품	9,940	· 야광모 : 50,000원×142명= 7,100 · 야광조끼 : 20,000×142명= 2,840	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